

[사 건 명] 행심 2017 - 4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중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7. 9.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학교에서 봉사 5시간과 학생특별교육 3시간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3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10. 12.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7. 10.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학교에서 ○○○를 밀치지 않았고, 오히려 ○○○가 어깨를 밀치고 나간 것이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이 ○○○에게 ‘김치’, ‘파우치’ 라고 부른 별칭은 평소 다른 친구들도 불렀던 별명으로서 1-2차례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고, ○○○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산정한 점수들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학교에서 ○○○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는 청구인이 자신을 아플 정도로 밀쳤고, 3-4정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측은 간곡한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와 ○○○ 부모님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진술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8점으로 사회봉사 처분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으나 본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 태도 속 반성하는 모습과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로 경감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가해학생별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 ⊕⊕⊕과 함께 ○○○에게 2회 ‘김치’ 또는 ‘파우치’ 라고 불렀다.

2) 청구인은 ○○○를 교실에서 3-4회 정도 어깨로 밀쳤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

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이 학교에서 ○○○를 밀치지 않았고, 오히려 ○○○가 어깨를 밀치고 나간 것이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픔을 느낄 정도로 3-4회 정도 밀침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의 진술을 특별히 배척할만한 사유가 없고, 위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이 ○○○에게 ‘김치’, ‘파우치’ 라고 부른 별칭은 평소 다른 친구들도 불렀던 별명으로서 1-2차례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고, ○○○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산정한 점수들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먼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에게 ‘김치’, ‘파우치’ 라는 말을 2회 정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로서 ○○○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에 대한 양정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이 사건 처분을 정함에 있어 세부별 점수판정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상의 폭행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